



땅 끝 에 남 소 식

2022년 1월 5일(513호)

HAENAM NEWS

◆ **군정목표** ◆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

◇ **군정방침** ◇

현장중심 소통행정
살기좋은 부자농촌
체류하는 문화관광
생동하는 지역경제
감동주는 맞춤형지

발행인: 해남군수발행처: 기획실 주소: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대표전화 061)530-5321팩스 530-5574홈페이지 <http://www.haenam.go.kr>
◎ 본지에 실린 고시·공고·조례 등은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

조례

◎ 해남군 조례 제3097호	-----	2
◎ 해남군 조례 제3098호	-----	5
◎ 해남군 조례 제3099호	-----	32
◎ 해남군 조례 제3100호	-----	36
◎ 해남군 조례 제3101호	-----	41
◎ 해남군 조례 제3102호	-----	46
◎ 해남군 조례 제3103호	-----	57
◎ 해남군 조례 제3104호	-----	68
◎ 해남군 조례 제3105호	-----	74
◎ 해남군 조례 제3106호	-----	80
◎ 해남군 조례 제3107호	-----	86
◎ 해남군 조례 제3108호	-----	96
◎ 해남군 조례 제3109호	-----	100
◎ 해남군 조례 제3110호	-----	129
◎ 해남군 조례 제3111호	-----	135

규칙

- ◎ 해남군 규칙 제1344호 ----- 145

고시

- ◎ 해남군 고시 제204호 ----- 164

공고

- ◎ 해남군 공고 제4033호 ----- 169
- ◎ 해남군 공고 제4061호 ----- 173
- ◎ 해남군 공고 제4065호 ----- 178
- ◎ 해남군 공고 제4066호 ----- 179
- ◎ 해남군 공고 제4077호 ----- 180
- ◎ 해남군 공고 제 1호 ----- 181

조례

제31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15.)에서
의결된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일

해남군수 _____

해남군 조례 제3097호

붙임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회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회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존속기한) ----- ----- 2024년 12월 31일 ----- ----- ----- ----- -----

제31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15.)에서
의결된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일

해남군수 _____

해남군 조례 제3098호

붙임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시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성별, 학력, 재산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량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는 당직근무자 또는 방호원(防護員)은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그 업무를 다하지 못 하거나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 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11조(과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과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과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② 다른 기관에 과견 근무하는 자가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근무시간 등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직무성질·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④ 의장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과 연장) ① 의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바꾸거나 늘릴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의장에게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의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의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생활 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휴가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제20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① 제19조에서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정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함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② 해당 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9조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제26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21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제21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과 그 배우자 부모의 생신일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로 인하여 제19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

⑤ 의장은 공무원에게 제19조에 따른 연가일수(제24조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⑥ 의장은 공무원이 제19조에 따른 연가일수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23조(연가 사용의 권장)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연가의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24조(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6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25조(연가일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공제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질병 또는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6조(병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

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5조 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공가)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경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8. 천재지변 또는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교육 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 예방접종을 할 때

제28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별표 4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

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만 5세 이하인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권 보장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⑧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⑪ 의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 휴원, 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⑭ 제13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⑮ 재난재해 현장 대응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

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5조제2항, 제19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3항·제4항, 제26조, 제28조제4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다.

제30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31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32조(휴가기간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국으로 본다.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33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해남군의회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등을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공기업은 제외한다)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

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34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33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5장 정치운동

제35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제3항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또는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에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깃발·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와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직 성명 (인)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공직자 행동규범(제5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안내는 공손한 태도로 친절하게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 절약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8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별표 5]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제19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6]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의 휴가 기준(제29조 관련)

1.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나.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한 시간이나 토요일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한다.

3.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text{제18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뺀다.

다. 제4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뺀다.

라.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권장 연가 시간은 의장이 정하는 권장 연가 일수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제20조의3제1항 따른 권장 연가 일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4. 병가

가.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frac{\text{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frac{\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

나.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3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5.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권 보장시간을 받을 수 있다.

나. 만 5세 이하인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31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15.)에서
의결된 해남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일

해남군수 _____

해남군 조례 제3099호

붙임 해남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공포문 1
부.

해남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해남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해남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사기진작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 된 공무원
4. 부패행위(뇌물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문서 위변조, 배임, 업무처리 부적정, 예산, 재정관련 법령위반 및 직무관련

사기)를 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샤워실 운영
2.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펜션 운영
3.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 등

제6조(후생복지사업 등의 시행)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검진 지원
2. 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3. 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4.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
5. 공무원 동호회 운영 지원
6. 직원 체육행사 등의 지원
7. 소속공무원의 생일·혼인·자녀의 입학·졸업 축하선물 등 제공
8. 국외선진지 견학 지원(배낭여행 포함)
9. 임신 여직원 및 자녀 출생 직원 출산용품 지원

- 10.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 11. 소속 공무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 대한 상조 서비스 등
- 12. 장애인공무원 편의시설 지원
- 13.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 1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통합 운영) 의장은 해남군수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해남군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15.)에서
의결된 해남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일

해남군수 _____

해남군 조례 제3100호

붙임 해남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중 해남군의회 공무원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적용의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내용)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
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
학기기·장비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
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
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
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

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15.)에서
의결된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일

해남군수 _____

해남군 조례 제3101호

붙임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및 그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관할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의장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을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해남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왕복 2km 이내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

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4조 관련)

(단위: 원)

구분	운임				숙박비 (1박당)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제31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15.)에서
의결된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일

해남군수 _____

해남군 조례 제3102호

붙임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지원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군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해남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모범 공무원)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행정실적을 크게 거양한 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해남군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5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상장으로 한다.

제6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

3. 해남군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자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
에게 수여한다.

1.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공적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으로써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군민이나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9조(공로패)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매우 크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 수여한다.

제10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11조(포상 시기) 포상은 의회 개원 기념식과 의회 개회식 때 함을 원칙으
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행한다.

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과장의 추천은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장
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모범 공무원의 포상절차) ① 제3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
일 전에 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모범공무원은 해남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년 마다 정원의 6퍼센트 이내로 선발한다.

제14조(공적 심사) ①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로 결정한다.

② 공적심사는 공적심사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사의결로 바꿀 수 있다.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의회에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회운영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가 심사·의결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 심사의 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모범 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 표창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함께 발급한다.

제17조(포상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을 제한한다.

- 1. 같은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 3.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

② 제16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회수하지 않는다.

-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 4. 의회 외의 기관으로 진출된 때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 대장에 올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표창장·감사장·공로패

← 금박인쇄

제 호

표창장 · 감사장 · 공로패

주 소
성 명

← 노랑바탕: 갈색테두리

(본문)

년 월 일

해남군의회의회장 ○○○

■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앞면)

공 적 조 서			
① 성 명	(한자)		
② 생 년 월 일	③ 군번(군인의 경우)		
④ 국적(외국인에 한정함)			
⑤ 주 소			
⑥ 소 속	⑦ 직 위		
⑧ 직 급	⑨ 근무기간		년 월
⑩ 추 천 훈 격	⑪ 추천순위		
주 요 학 력 및 경 력			
⑫ 연 월 일	⑬ 이 력	⑭ 연 월 일	⑮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⑯ 연 월 일	⑰ 내 용	⑱ 연 월 일	⑲ 내 용
조 사 자			
⑳ 소 속	㉑ 직 위		
㉒ 직 급	㉓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뒷면)

공 적 사 항

■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상 여 금 증 서

소 속:

직성명:

위 사람은 20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제16조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함.

- 지급액: 금 원
- 지급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해 남 군 의 회 의 장

제31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15.)에서
의결된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일

해남군수 _____

해남군 조례 제3103호

붙임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에 따른 해남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제43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원”으로, “등에 관한 사항을”을 “등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원은 군민의”를 “해남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하여서”를 각각 “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직무상”을 “직무수행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

법」 제43조제1항의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한다.

⑦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⑨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의 제목“(관리인 등 겸직 금지) 의원은”을“(관리인 등 겸직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당”을 “의원은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해당지방자치단체가”를 “군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를 “군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해남군의회 위원조례」 제3조”를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

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표를”을 “별표 1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를 “군과 공공단체에 대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와”를 “군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자치법」 제44조 위반

별표 1의 제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별지1>”를 “검직(변경) 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의회의원 (인)

해남군의회의회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른 <u>해남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제43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의원</u>----- ----- 등을 ----- -----.</p>
<p>제2조(윤리강령) <u>의원은</u> 군민의 대표자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u>의원윤리강령</u>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p> <p>1. ~ 4. (생략)</p>	<p>제2조(윤리강령) <u>해남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u> <u>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u>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p> <p>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u>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u> 아니된다.</p> <p>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u>하여서는</u> 아니된다.</p> <p>3. · 4. (생략)</p>	<p>제3조(윤리실천규범) ----- ----- ----- --.</p> <p>1. ----- ----- <u>해서</u>----- -----.</p> <p>2. ----- ----- <u>해서</u>----- -----.</p> <p>3. · 4. (현행과 같음)</p>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생략)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생략)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검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5. ----- 그 밖에 -----

-----.

6. (현행과 같음)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
-----.

8. 직무 수행에 -----

-----.

제4조(윤리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제5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별지 제2호서

② ~ ④ (생략)

⑤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식-----.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의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한다.

⑦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관리인 등 겸직 금지)

의원은 ①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⑨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의2(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

-----.

② -----
-----.

1. 군이 -----

2. 군의 -----

3. 군으-----

③ -----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생략)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해남군의회 위원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생략)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생략)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 임직원-----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

제7조(징계 등) -----

----- . -----
----- 별표 1을 ----- .

1. (현행과 같음)
2. -----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3. (현행과 같음)
4. --- 군과 공공단체에 대해 -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생략)

7.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
의 의무) 위반

5. --- 군과 -----

6. (현행과 같음)

7. 「지방자치법」 제44조 위반

제31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15.)에서 의결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일

해남군수 _____

해남군 조례 제3104호

붙임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원”을 “해남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남군 소속공무원”을 “해남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2항 중 “해남군 소속”을 “소속”으로 한다.

제7조를 제5조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7조 및 제3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행 일수는 공무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로 한다. 다만, 공무

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③ 제1항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월정수당은 해남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생략)

<신설>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여비 지급기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는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

같음)

② ----- 소속 -----

--.

<삭제>

제7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행 일수는 공무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③ 제1항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3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5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삭제>

레」에 따른다.

제9조 (생략)

제8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31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15.)에서
의결된 해남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일

해남군수 _____

해남군 조례 제3105호

붙임 해남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
부.

해남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남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해남군의회”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 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을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의”를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을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운영 등”을 “운영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2. 의원 발의 조례안 등 기초 조사 및 자료 분석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4. 그 밖에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이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수행에 제한을 받는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⑤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치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 중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해남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u>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u></p> <p>② <u>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u></p> <p>제3조(사무과장) ① (생략)</p> <p>② <u>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u></p>	<p><u>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와 「<u>지방자치법 시행령</u>」 제38조에 따라 <u>해남군의회</u>----- -- <u>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u> ----- ----- ----- -----.</p> <p>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u>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u> -----.</p> <p>② ----- <u>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 ----- <u>운영 등</u> ----.</p> <p>제3조(사무과장) ① (<u>현행과 같음</u>)</p> <p>② ----- ----- <u>총괄</u>----- -----.</p>

제4조(전문위원) ①·② (생략)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신설>

제4조(전문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에 따른 -----

-----.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남군의

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2. 의원 발의 조례안 등 기초 조사 및 자료 분석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4. 그 밖에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이외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해남군지방 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수행에 제한을 받는다.

-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⑤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치한다.

제6조(직원의 정원) -----
----- 「해남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제7조(시행규칙) -----
필요한 -----
-----.

제31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15.)에서
의결된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일

해남군수 _____

해남군 조례 제3106호

붙임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 공포문 1부.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를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상당한”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초과할”을 “넘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날로”를 “날”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당해”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를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 각호”를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를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 제1항 제3호”를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5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를 “지방자

치법 제32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 9. 15.>

② (생략)

제5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① (생략)

② 심의회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13조(보상금의 청구등)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

1. -----

----- 해당 연도
----- 해당하는

2. -----
----- 해당 연도

3. -----

----- 넘을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날-----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상금의 청구등) ① -----
-----.

다.

1. (생략)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본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 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장애의 상태 정도 구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
그 밖의 -----
그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 부터 6개월 이내-----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

-----.

제16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
-----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
-----.

② 제4조제1항제3호-----

-----.

제31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15.)에서
의결된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일

해남군수 _____

해남군 조례 제3107호

붙임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군청과 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누리집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의회 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해남군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p> <p style="text-align: center;">일</p> <p style="text-align: center;"> 해남군의회 의장 직인 </p>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해남군의회 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31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15.)에서
의결된 해남군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일

해남군수 _____

해남군 조례 제3108호

붙임 해남군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남군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또는”을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와 그”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 또는”을 “해남군의회나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하부행정기관”을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129조에 따른 소속행정 기관장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해남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해남군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u>해남군의회</u> (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범위) <u>의회</u>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u>법 제113조 내지 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 기관장</u> 4. (생략) 5. <u>하부행정기관의 장</u> <p><신 설></p>	<p><u>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u>해남군의회와 그 -----</u></p> <p>-----.</p> <p>제2조(범위) <u>해남군의회나 그 -----</u></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129조에 따른 소속행정 기관장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출

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
에 법률에 따라 해남군이 출
자·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
과 간부직원

제31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15.)에서
의결된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일

해남군수 _____

해남군 조례 제3109호

붙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해남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본회의”를 “본회”로, “행할”을 “실시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하여”를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로, “언어”를 “받아”로, “의하여 행한다”를 “따라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회의장”을 “의회 의장”으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지”를 “승인되면 지체 없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다만, 감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수정 또는 재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할 경우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본회의”를 “본회”로, “조사를 행”을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의 발의”를 “조사 발의”로, “범위”를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를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제4항 중 “휴회중일”을 “휴회 중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사위원회”를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언어”를 “받아”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다만,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수정 또는 재작성한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해남군에”를 “군에”로, “주민은 20인”을 “주민이 20명”으로, “발의하여 의원1인”을 “발의하고 의원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1조부터 제134조의 규정에 의

한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된 군의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군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제5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본회의가”를 “본회의”로,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의결한 경우에 군”으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를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또는 조사의”를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로, “다른지방 자치단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사함에 있어서”를 “조사를 할 때에”로, “상호 협의 하여야”를 “상호 협의하여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중”을 “군의 사무 범위에서 실시하되,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사무 중”으로, “대하여 실시한다”를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 중 “중간보고”를 “중간 보고”로, “이의 검토후”를 “이를 검토한 후”로 한다.

제8조 중 “계속중”을 “계속 중”으로, “수사중”을 “수사 중”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감사”를 “본회의, 감사”로, “필요한 때에는”을 “필요하면”으로,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의견진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에 있어”를 “경우”로, “제출이나 준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등”으로, “해당 일의 3일전”을 “해당일의 3일 전”으로, “도달하여야”를 “도달되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진술일등의 1일전”을 “진술일 등의 1일 전”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형사소송법」 제1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 선서서는 별표 1에 의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의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구분중 제2호를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는 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각조”를 “각 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로 한다.

제9조의5 중 “법 제4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으로, “개시전 까지”를 “개시전까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과태료 부과대상)”을 “(과태료 부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2를 삭제하고,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를 각각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로 한다.

제10조의2(중전의 제10조의3) 제1항 전단 중 “제10조의2”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의3(중전의 제10조의4)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의4(중전의 제10조의5)제1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제10조의5(중전의 제10조의6)제2항 중 “제10조의 3”을 “제10조의2”로 한다.

제11조 중 “대상현장이나 기타”를 “대상 현장이나 그 밖”으로 한다.

제12조 단서 중 “감사”를 “본회의, 감사”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을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본회의”를 “본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법 및 해남군 의회회의 규칙”을 “「해남군 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8조 중 “운영등”을 “운영 등”으로, “해남군의회의위원회조례와 해남군의회의회의규칙”을 “「해남군의회의 위원회 조례」와 「해남군의회의 회의규칙」”으로

한다.

별표 1 중 “선서서”를 “선서서(제9조의2제5항 관련)”로 하고, 같은 표 중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로, 같은 란 중 “보탬없”을 “보탬 없”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17조의2 관련)”을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2022.1.13.>

과태료 처분 통지서(제10조의2제3항)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해남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를 붙임 납부통지서와 같이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해남군금고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에 따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남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해 남 군 수 (인)

■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10조의2제3항)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서)

제 호	회 계 년 도	년도
세입과목	(관)임시적세의수입 (항)잡수입 (의회불출석·증언과태료)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p>「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불출석·증언의 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해남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p> <p>해 남 군 수 (인)</p>		

영수필통지서 (군청통보용)

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보관용)

제 호	회 계 년 도	년도
세입과목	(관)임시적세의수입 (항)잡수입 (의회불출석·증언과태료)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p>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p> <p>년 월 일</p> <p>수납은행 : (인)</p>		
수납일자인		

영 수 증 (개인통지용)

제 호	회 계 년 도	년도
세입과목	(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의회불출석·증언과태료)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일자인		
	해 남 군 수 귀 하	

제 호	회 계 년 도	년도
세입과목	(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의회불출석·증언과태료)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일자인		취급자인

■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제10조의3제1항 관련)

제 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 청 인	①성 명		③생 년 월 일	
	②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부과기간		⑤납부통지서번호	
	⑥고지받은 일 자			
	⑦과 태 료 처분사유			
⑧과태료에 대한 불복 사유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해 남 군 수 귀 하

■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2022.1.1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제10조의3제2항 관련)

제 호

해 남 군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와 관련입니다.

2. 위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①성 명		②생 년 월 일	
	③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고지일자		⑤과태료 금액	
	⑥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 붙 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해 남 군 수 (인)

■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제10조의3제1항 관련)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 무 자	①성 명		③생 년 월 일	
	②주 소			
④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⑤위반사항				
⑥과태료금액		원	⑦당초납부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해남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해남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감사) ① <u>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u></p>	<p>제2조(감사) ① <u>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 본회----- 실시할 ----.</u></p>
<p>② <u>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u></p>	<p>② ----- ----- ----- -----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 받아 ----- 따라 실시 한다.</p>

③ (생략)

<신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다만, 감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수정 또는 재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회 의장-----

-- 승인되면 지체 없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

⑥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할 경우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
-- 1 이상-----
본회-----
-----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

⑦ (생략)

제3조의2(주민직소조사청구) ① 해남군에 주소를 가진 주민은 2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의원1인 이상을 경유하여 군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청구된 사안은 의장이 판단하여 경미한 건은 처리담당의원을 지정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중요한 건은 지체없이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

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수정 또는 재작성한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주민직소조사청구) ① 군에 ----- 주민이 20명 ----- 발의하고 의원 1명 -----

-----.

② -----

----- 지체 없 -----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

1. -----
2. -----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1조부터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

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
한 하부행정기관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
방공기업

4. 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
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
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
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에 한한다.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
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
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
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
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
무가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
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행정기관

3. 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된
군의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
된 사무(군에 위임 또는 위탁
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
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
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 공단 외의 출자·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
는 출연하는 법인.-----
----- 본회의 -----
----- 의결한 경우에 군----
----- 업무, 회계, 재산에 대
하여만 ----.

② ---- 제1항에 따른 감사 또
는 조사 -----
---- 다른 지방자치단체-----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 하야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 및 도의 위임 사무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 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

----- 조사를 할 때에 -----
----- 상호 협
의하야야 ----.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
----- 군의 사무 범위에서 실시
하되,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전라남도
(이하 “도” 라 한다) 사무 중

-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
----- 중간 보고-
----- 이를 검토한 후 -----

-----.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

----- 계속 중----- 수
사 중-----
-----.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
----- 필요하면 -----

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
 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
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
 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
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
 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
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
 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
 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
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9조의2(증인선서) ① 의장 또

----- 조
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
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
람의 출석·증언·의견진술-----
 ----- . ----- 경우 -----
 ---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등-----

----- 해당
일의 3일 전-----
 ----- 도달되어야 --- .

② -----
 --- 관계 기관-----

 ----- 따라
야 -----
 ----- .

③ -----

 ----- 진술일 등의
1일 전-----
 ----- .

제9조의2(증인선서) ① 의장 또

는 위원장은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때는 군수나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선서하기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의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구분중 제2호를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선서의 방식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시 하는 선서방식에 준

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삭 제>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

한다. 다만,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선서서는 별표 1호에 의한 다.

제9조의 3(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 「형사소송법」 제157
조-----.

⑤ 선서서는 별표 1에 의한다.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 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제9조의4(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 각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41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도의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5(대리출석·답변의 통지) 군수는 법 제4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의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구분중 제2호를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4(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 ① 제6조에 따라 -----

----- 각 조 -----
-----.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

-----.

제9조의5(대리출석·답변의 통지) ----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

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 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해 출석 및 서류 제출요구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사람
4.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사람

<신 설>

제10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별표 2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개시전까지 -----

-----.

제10조(과태료 부과)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삭 제>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군수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징수·체납처분·압류
등) ①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이 경과된 날부터 15일내에 10
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
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징수·체납처분·압
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의6(의장의 통보) ① (생
략)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군수는
제10조의 3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
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
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별지 제4호서식 -----
-----.

제10조의4(징수·체납처분·압류
등) ① -----
----- 별지 제5호
서식-----

-----.

② -----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0조의5(의장의 통보) ① (현행
과 같음)
② -----
제10조의2-----
-----.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

----- 대상 현장이나 그
밖-----.

제12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척과 회피) ① (생략)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생략)

제1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6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제12조(공개의 원칙) -----
----- . ---- 본회의, 감사 -----
----- .

제13조(제척과 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

----- .

③ -----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
-----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

----- 지체 없-----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 본회-----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생략)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
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
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해남군 의
회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
라 징계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
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
항은 해남군의회위원회조례와
해남군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
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에
따라 -----
----- 지체 없-----

-----.

제17조(징계) -----
----- 제13조에 따른 -----

----- 제14조에 따른 --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

제18조(준용규정) -----
----- 운영 등-----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

제31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15.)에서
의결된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일

해남군수 _____

해남군 조례 제3110호

붙임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회의의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총일수)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 제목 “(회의일수)”를 “(회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의는 총 일수 35일 이내로 한다.
-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해남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집회)”를 “(정례회의 집회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제1호 후단 중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을 “9월 또는 10월중에 열”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심의)”를 “(정례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0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9조에 따른”으로,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관한 사항은 「해남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45조,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개최) 의회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한다.</p>	<p>제2조(회의총일수)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p>
<p>제3조(회의일수) 의회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례회의는 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례회의 35일 2. 임시회의 55일 	<p>제3조(회기)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2항에 따른 정례회의는 총일수 35일 이내로 한다.</p>
<p><신 설></p>	<p>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p>

제4조(집회)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둘째 수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생략)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

한다)은 해남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 9월 또는 10월중에 열 -----.

2. (현행과 같음)

제5조(정례회의 운영) ① -----
- 법 제150조에 따른 -----
----- 그 밖에 -----
-----.

- ② ----- 법 제49조에 따른 -----
----- 법 제142조에 따른 -----

-----.

제6조(준용) -----

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
의규칙을 준용한다.

----- 관
한 사항은 「해남군의회 회의규
칙」-----.

제31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15.)에서
의결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일

해남군수 _____

해남군 조례 제3111호

붙임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남군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를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주택과,”를 “건설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총선거후”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잔임기간으”를 “남은 임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만료되는”을 “끝나는”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언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심사 등을 위해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를 둔다.
- ⑥ 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을 심사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둔다.
-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⑧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과 이 조례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석위원 중”을 “출석위원 중”으로, “그중”을 “그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선임한다”를 “선임(選任)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위원은 「해남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u>해남군의회</u> ----- ----- -----.</p>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u>의회</u>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u>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산업건설위원회 안전도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경제산업과, <u>건설주택과</u>, 환경교통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축산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u>건설과</u>, ----- ----- -----</p>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u>총선거후</u> 처음 선임된 위</p>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 ----- -----.</p> <p><u>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u> -----</p>

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하며,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의원임기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 ③ (생략)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② (생략)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신 설>

-----.

② -----
----- 남은 임기-----.

③ -----
----- 끝
나는 -----.

제6조(상임위원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받아 -----
-- . -- 폐회 중-----
-----.

제7조(특별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⑤ 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

<신 설>

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심사 등을 위해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⑥ 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을 심사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⑧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과 이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
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
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는 출석위원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
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
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생략)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조례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
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

----- 호선(互選)-----
--.

② -----
----- 출석위원 중 -----

----- 그 중 -----
-----.

③ -----
----- 받아 -----
----- . ----- 폐회 중--

-----.

제9조(위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선임(選任)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
-----.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
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해
남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
과 청원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사, 기타 소관 사항과 관련하
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
집조사, 연구를 행한다.

③·④ (생략)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
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전문위원) ① -----

- 전문위원은 「해남군의회사
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등에 관
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한다.

② -----

--- 그 밖에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준용규정) -----

----- 관한 -----
-----.

규 칙

제19회 해남군 조례·규칙 심의회(2021. 12. 20.)에서 의결된
해남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일

해남군수 _____

해남군 규칙 제1344호

붙임 해남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공포문 1부.

해남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해남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남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청의”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본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남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청의”를 “훈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청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추정가격”을 “추정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제2항(중전의 제3항)제1호 중 “추정가격”을 “추정금액”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남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를 “해남군수는 (이하 “군수”라 한다) 훈령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의회**”를 “**훈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훈령 제2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제1관서의 재무관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제6조제1항 중 “**규칙 제22조제1항**”을 “**훈령 제22조제1항**”으로, “**따른다**”를 “**따르며,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 의한다.

제6조제2항 중 “**규칙 제22조제2항**”을 “**훈령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집행 요구 기준액)**”을 “**(지출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② 각 부서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소규모 공사(본청 제외)의 1건당 추정가격 1,000만원 미만 및 소규모 용역·임차, 소모품의 매입·수리·운반, 인쇄물 등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집행은 예외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례·반복적으로 시행하고 과거에 대가 지급 이력이 있는 유지(관리)보수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에서 각 부서 일상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④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의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법령·조례에서 정한 절차·방법 등에 따라 해당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⑥ 각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8조제1항 중 “규칙 제97조”를 “훈령 제97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칙 제135조제1항”을 “훈령 제135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2, 3,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해남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p> <p>1. ~ 4. (생략)</p> <p>② <u>해남군의회 (이하 “군의회”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남군 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u></p> <p>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단서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u>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p> <p>-----</p> <p>-----</p> <p>-----.</p> <p>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본청의 -----</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② -----</p> <p>-----</p> <p>-----</p> <p>-----</p> <p>----- . 다만, <u>해남군의회</u></p>

2. · 3. (생략)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해남군수 (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부군수, 실·과·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신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단서 신설>

2. · 3. (현행과 같음)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해남군수는 (이하 “군수” 라 한다) 훈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

-----.

② 훈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
--.

③ 훈령 제2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제1관서의 재무관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1항-----

----- 따르며,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②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집행 요구 기준액) 규칙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 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② 훈령 제22조제2항-----

--.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소규모 공사(본청 제외)의 1건당 추정가격 1,000만원 미만 및 소규모 용역·임차, 소모품의 매입·수리·운반, 인쇄물 등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집행은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례·반복적으로 시행하고 과거에 대가 지급 이력이 있는 유지(관리)보수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각 부서 일상경비로 집행할 수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있다.

④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의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법령·조례에서 정한 절차·방법 등에 따라 해당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⑥ 각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

-----.

< 별표 1 >

(당초)

해남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군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
			제1관서	읍·면	
회 계 책 임 관	기획실장	-	-	-	-
징 수 관	부군수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읍·면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
재 무 관	부군수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분 임 재 무 관	재무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소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
총괄채권관리관	부군수	-	-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읍·면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부군수	-	-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읍·면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실장	-	-	-	-
통 합 지 출 원	재무과장	-	-	-	-
지 출 원	경리팀장	의사팀장	재무업무담당	읍·면의 총무팀장	-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팀장	세입업무 담당팀장	세입업무 담당팀장	세입업무 담당팀장	세입업무 담당팀장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 서무업무팀장	-	각 실·과 서무업무팀장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	서무업무 담당팀장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 담당자	지출업무 담당자	지출업무 담당자	서무업무 담당팀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 별표 1 >

(변경)

해남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칭	제1관서			기타관서
		군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회 계 책 임 관	기획실장	-	-	-	-
징 수 관	부군수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읍·면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재무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
재 무 관	부군수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읍·면장	관서의 장
분 임 재 무 관	재무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	-
총괄채권관리관	부군수	-	-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읍·면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부군수	-	-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읍·면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실장	-	-	-	-
통 합 지 출 관	재무과장	-	-	-	-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팀장 (경리팀장)	의사업무 담당팀장	지출업무담당팀장 (경리업무담당팀장)	지출업무담당팀장	-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팀장 (세정팀장)	세입업무 담당팀장	세입업무담당팀장	세입업무담당팀장	세입업무 담당팀장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팀장	-	서무업무담당팀장	서무업무담당팀장	서무업무 담당팀장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 담당자	지출업무 담당자	지출업무 담당자	지출업무 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 별표 2 >

(당초)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항제2조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	기타관서
보건소	공룡화석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스포츠사업단
의회사무과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	축산사업소

< 별표 2 >
(변경)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항제2조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	기타관서
보건소	공룡화석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스포츠사업단
의회사무과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	축산사업소 기후변화대응지원단

< 별표 3 >

(당초)

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부군수	실·과·소장
공사, 토지매입	2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용역, 물품 제조·구매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기타사항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 별표 3 >

(변경)

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부군수	실·과·소장	관서의 장
공사, 토지매입	2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용역, 물품 제조·구매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기타사항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 별표 4 >

(당초)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200만원 이상	
3. 시책 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전 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8. 기타 경비	"	

< 별표 4 >

(변경)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 금액	합의 방법	비고 (기초금액 기준)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00만원 이상	전자 또는 서면	(서면합의 대상)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 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200만원 이상	전자 또는 서면	(서면합의 대상) 500만원 이상
3. 시책 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전자	
4. 민간위탁경비	전 액	전자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	전자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	전자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 하고자 하는 경우	”	서면	
8. 기타 경비	”	전자	

※ 기초금액 : 추정가격(순공사원가+제경비) + 부가가치세

※ 서면 합의 후, 품의 등록 시에 서면 합의 문서 첨부

고 시

해남군 고시 제2021 - 204호

해남군 군계획시설(소로 2-19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963-3번지 일원에 해남군 군계획시설(소로 2-19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30.

해 남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963-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 소로 2-19호
 - 명 칭 : 문내면 우수영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사업시행자 : 해남군수
4. 사업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5. 6. 30.
5. 사업규모
 - (소로 2-19호선)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9	8	국지도로	1,022	대로 3-15	중로 2-27	일반 도로	
시행	소로	2	19	8	국지도로	172	문내 동외 893-3	문내 동외 963-3	일반 도로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관계 도서는 해남군청 안전도시과(☎530-52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합계				34,514	1,533						
1	문내 동외	963-3	대	11	11	해남군					
2	문내 동외	963-2	도	30	30	김*수	목포시 신흥로 **				
3	문내 동외	964-2	도	23	23	평신*섭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				
4	문내 동외	964-3	대	11	11	해남군					
5	문내 동외	965-3	대	12	12	해남군					
6	문내 동외	965-2	도	23	23	이*태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				
7	문내 동외	966-1	대	12	12	해남군					
8	문내 동외	974-3	대	72	72	김*심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안길 **	**금고	문내면 동외리 **	근저당	
9	문내 동외	975-3	대	65	65	이*전	전북 익산시 서동로7길 **				
10	문내 동외	977-5	대	5	5	전*욱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안길 **				
11	문내 동외	1006-4	대	66	66	해남군					
12	문내 동외	1191-14	도	33,624	643	국					
13	문내 동외	1006-2	도	33	33	이*인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				
14	문내 동외	1005-2	도	10	10	박*필					
15	문내 동외	1004-2	도	17	17	최*기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				
16	문내 동외	1002-3	대	26	26	유*길	서울 구로구 구일로8길 **				
17	문내 동외	1002-2	도	23	23	최*언					
18	문내 동외	998-2	도	13	13	이*윤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				
19	문내 동외	974-2	도	43	43	이*석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				
20	문내 동외	975-2	도	20	20	송*일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				
21	문내 동외	977-2	도	7	7	완 산 * 봉 외 1인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				
22	문내 동외	977-4	대	46	46	이*길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안길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23	문내 동외	979-1	대	28	28	박*식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안길 **				
24	문내 동외	978-3	대	50	50	장*수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안길 **				
25	문내 동외	986-1	대	6	6	김*자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안길 **	국			압류
26	문내 동외	985-1	대	30	30	이*금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안길 **				
27	문내 동외	894-4	대	36	36	이*환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안길 **				
28	문내 동외	893-3	대	67	67	조*문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안길 **				
29	문내 동외	976-2	도	7	7	최*서					
30	문내 동외	978-2	도	10	10	최*동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				
31	문내 동외	987-2	도	20	20	김*어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				
32	문내 동외	894-2	도	7	7	주*대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안길 **				
33	문내 동외	988-2	도	13	13	최*표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				
34	문내 동외	893-2	도	3	3	추*욱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				
35	문내 동외	987-4	대	1	1	박*이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안길 **				
36	문내 동외	1004-3	대	14	14	김*옥	서울 강북구 수유동 **				
37	문내 동외	1005-3	대	6	6	박*례	용인시 수지구 장현동 **				
38	문내 동외	997-2	도	23	23	이*원					
39	문내 동외	998-3	대	1	1	이*정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				

공 고

해해남군 공고 제2021 - 4033호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산지관리법』 제18조의5 및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그 허가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7.

해 남 군



연번	신청인	신청지			면적(m ²)		용도
	성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1	계				3,191	3,191	태양광발전 시설
	이OO	마산면 학의리	1203	전	347	347	
			1203-3	답	1,202	435	
			1203-8	임	93	48	
			1203-9	임	1,549	1,044	
	이OO	마산면 학의리	1203-3	답	1,202	767	
			1203-8	임	93	45	
			1203-9	임	1,549	505	

-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1년
- 공고기간: 2021. 12. 28. ~ 2022. 1. 11.

○ 이의신청 방법

- 위 산지전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년 1월 11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산지관리법 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자(1. 가옥의 소유자, 실제로 거주하고있는 주민, 공장의 소유자,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는 위 공고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 아래의 이의신청서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부를 붙여 해당군청 산림녹지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에 따른 이의가 있을시 그 사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증빙서류(500미터 이내 가옥의 소유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등)

※ 위 산지관리법 제18조의5(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의 의견수렴은, 산지의 전용면적이 30,000㎡ 이상에만 해당되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주민, 사업지 인근 묘지 및 농지등의 피해방지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반영하기 위한 공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치도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학의리 1203전, 1203-3답, 1203-8임,
1203-9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개정 2015.12.30.>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대상사업	사업명(사업목적)			
	사업자성명(법인명)			
	사업자주소			
	사업소재지			

이의신청 사유 및 구체적 내용

「산지관리법」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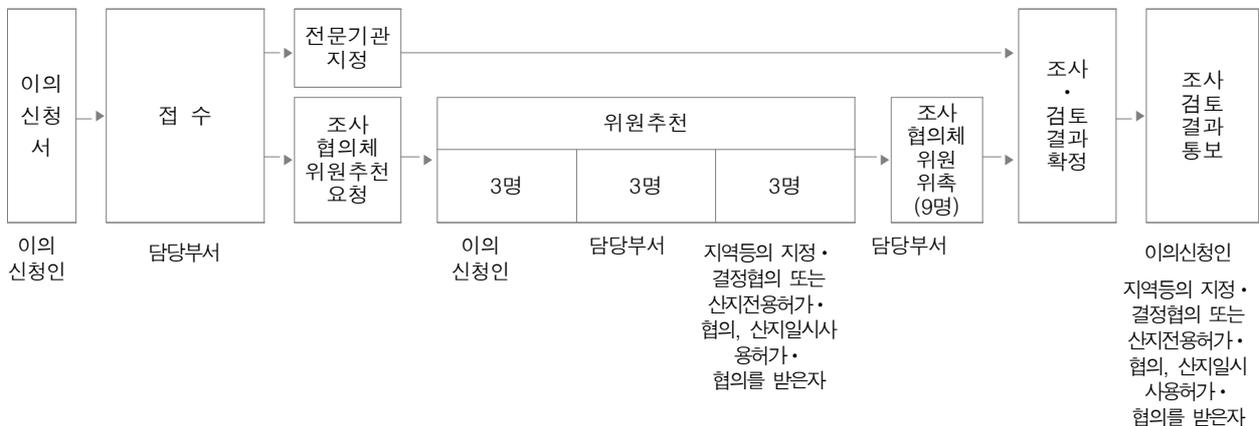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 사유 및 구체적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허가·협의를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서(서명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해남군 공고 제2021 - 4061호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산지관리법』 제18조의5 및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그 허가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9.

해 남 군



연번	신청인		신청지			면적(m ²)		용도
	성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1	계				4,906	2,463	창고시설 (농업용창고)	
	민OO	산이면 상공리	563-11	임	1,916	1,281		
			563-21	임	1,756	1,026		
			563-22	임	1,234	156		
2	계				4,205	1,898	창고시설 (농업용창고)	
	민OO	산이면 상공리	563-11	임	1,916	635		
			563-21	임	1,756	730		
			563-12	전	533	533		

-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2년
- 공고기간: 2021. 12. 30. ~ 2022. 1. 13.

○ 이의신청 방법

- 위 산지전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년 1월 13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산지관리법 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자(1. 가옥의 소유자, 실제로 거주하고있는 주민, 공장의 소유자,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는 위 공고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 아래의 이의신청서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부를 붙여 해당군청 산림녹지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에 따른 이의가 있을시 그 사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증빙서류(500미터 이내 가옥의 소유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등)

※ 위 산지관리법 제18조의5(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의 의견수렴은, 산지의 전용면적이 30,000㎡ 이상에만 해당되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주민, 사업지 인근 묘지 및 농지등의 피해방지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반영하기 위한 공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치도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563-11임, 563-21임, 563-12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개정 2015.12.30.>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대상사업	사업명(사업목적)			
	사업자성명(법인명)			
	사업자주소			
	사업소재지			

이의신청 사유 및 구체적 내용

「산지관리법」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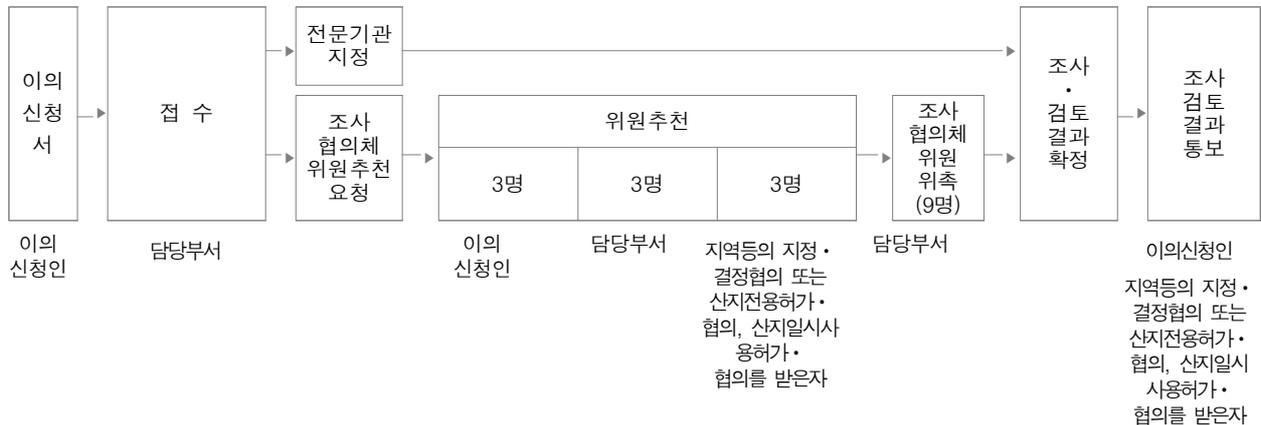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 사유 및 구체적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허가·협의를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서(서명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해남군공고 제2021-4065호

공인 폐기사항 공고

해남군 공인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인 폐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31.

해 남 군 수

- 1. 폐기사유: 청사신축사업 완료로 관련 조례 폐지
- 2. 폐 기 일: 2021. 12. 31.(금)
- 3. 폐기 공인 인영

공 인 명	인 영	규격(cm)	보관부서
해남군청사신축 기금운용관		2.0 정방형	재무과 (폐기)

해남군공고 제2021-4066호

공인 등록 및 폐기사항 공고

해남군 공인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인 등록 및 폐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31.

해 남 군 수

1. 등록 및 폐기사유: 고유서체(해남체)를 사용한 직인 변경
2. 등록공인 사용일: 2022. 1. 1.(토)
3. 등록 및 폐기 공인 인영

구분	공인명	인영	규격(cm)	보관부서
등록	해남군수인		3.0 정방형	총무과
등록	해남군수인 민원사무전용		3.0 정방형	종합민원과

해남군공고 제2021-4067호

공인 등록사항 공고

해남군 공인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인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31.

해남군수

1. 등록사유: 해남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2. 등록공인 사용일: 2022. 1. 1.(토)
3. 등록 공인 인영

공인명	인영	규격(cm)	보관부서
해남군기후변화 대응지원단장인		2.0 정방형	기후변화대응지원단 (등록)
해남군기후변화 대응지원단 일상경비출납원인		1.8 정방형	기후변화대응지원단 (등록)

해남군공고 제2022-1호

공인 등록사항 공고

해남군 공인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인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3.

해 남 군 수

- 1. 등록사유: 해남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 2. 등록공인 사용일: 2022. 1. 3.(월)
- 3. 등록 공인 인영

공 인 명	인 영	규격(cm)	보관부서
해남군기후변화 대응지원단 분임재무관인		1.8 정방형	기후변화대응지원단 (등록)
해남군기후변화 대응지원단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1.8 정방형	기후변화대응지원단 (등록)
해남군기후변화 대응지원단 징수관인		1.8 정방형	기후변화대응지원단 (등록)

공 인 명	인 영	규격(cm)	보관부서
해남군기후변화 대응지원단 물품출납원인		1.8 정방형	기후변화대응지원단 (등록)
해남군기후변화 대응지원단 물품관리관인		1.8 정방형	기후변화대응지원단 (등록)